

한 식 진 흥 법 시 행 령 안

1. 의결주문

한식진흥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식진흥법이 제정(법률 제16553호, 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사업 등(안 제2조)

한식의 국내외 확산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한식 및 한식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 사업, 한식 박람회·전시판매전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하거나 한식사업자 등의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함

나.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및 기준 등(안 제3조)

- (1)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학교에 설치된 부설 연구소,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등으로 함
- (2)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다. 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 범위(안 제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를 교육자료 개발·제공, 강사료·수당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실습 재료·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등으로 함

라. 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안 제5조)

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하는 업무를 한식 및 한식산업 실태조사, 한식 정보체계 구축·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 예고(2020. 4. 10. ~ 5. 21.)

한식진흥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한식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식의 국내외 확산 사업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한식 및 한식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개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식문화홍보 이외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원하고, 한식문화의 홍보에 관한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한다.

1. 한식 및 한식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교육·홍보·조사·연구사업
2. 한식 박람회·전시판매전 등을 국내외에서 개최하거나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 등의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
3. 한식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연구 개발 사업
4. 그 밖에 한식 및 한식 문화를 홍보하거나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및 관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중 한식산업 또는 한식문화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곳을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학교에 설치된 부설 연구소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7.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
9. 해외에 주 사무소를 둔 외식조리 분야 학교 또는 학원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정할 것
3.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양성기관 지정의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전문인력 양성 경비 지원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자료 개발·제공, 교육 강사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비용
2. 강사료, 수당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실습 재료 및 기자재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4.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취·창업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권한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한식진흥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2. 법 제7조에 따른 한식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4.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
5. 법 제15조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부 칙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